

9. 開放時代에 對備한 建設金融 活性化 方案

主催：建設共濟組合, 國土開發研究院

지난 11월 17일(목)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제조합과 국토개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개방시대에 대비한 건설금융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의 주제발표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A. 금융시장의 개방일정 및 파급효과

이 천 표(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I. 금융(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의 의미

1. 외국금융기관의 진입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서 가격, 질, 종류의 경쟁이 생김

2.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우리 금융기관들이 선진시장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음

3. 사실상의 자본이동(노동이동과 대비됨)

-그러나 금융은 공공재,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감독과 규제는 불가피

II. 우리 금융개방일정

UR의 타결이후의 이른바 Blue Print

III. 금융개방의 효과

1. 금융서비스 시장
 - 금융상품의 종류, 질, 거래규모가 달라짐
2. 금융서비스를 중간투입물로 하는 여타 관련부문
 - 자금코스트의 하락가능성
 - 환율 변동의 심화 가능성
3. 노동시장
 - 고급노동과 저급노동의 2분화
 - 예) 해외건설, 단순토목공과 엔지니어
4. 합작투자, 다국적기업
 - M & A, 증권투자, 신규투자, 기술이전을 동반하는 투자
 - 경쟁시장화(대비: 담합, 하청의 부조리)
 - 지구촌화된 거대조직의 일환으로 참여(우리의 종합건설업과 세계적 종합건설업)
5. 자본유출의 확대
 - 환율의 심한변동(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 이른바 hot money

☞ 금융개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없음.

■ Blue Print의 내용 ■

A. 금리자유화 계획

1단계 : • 1,2금융권 모든 여신금리의 자유화(정책금융 제외)

-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의 자유화(은행 정기예·적금, 상호금융의 정기예·적금 등)
- 만기 2년 미만의 회사채 및 금융채의 금리자유화
- 통화채, 국공채의 발행금리 실세화

- 2단계 :
- 단기 시장성 상품의 발행한도 및 만기 등에 대한 자유화폭 확대
 - 상업어음 할인 등 한은 재할인대상 대출의 금리자유화
 - 이차보전을 받는 금융자금 대출(특별설비자금 등)의 금리자유화
 -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의 자유화
 - MMC, MMF 등 시장금리연동부 상품도입

- 3단계 :
- 단계적인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 단기사장성상품에 대한 제한철폐 검토

B. 통화관리방식 개선

- 1단계 :
- 국공채, RP거래금리 및 통화채 발행금리의 실세화
 - 중심통화(M2)의 목표설정 및 운영방법 개선

- 2단계 :
- 한은대출금리의 신축적 운용
 -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
 - 은행의 자율적인 지준적립관행 유도
 - 재할인 총액한도제의 점진적 도입
 - 중심통화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통화량, 금리, 환율을 연계한 통화신용정책 운용

- 3단계 :
- 통화채발행 축소 및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본격 실시
 - 예금지급준비율의 점진적 인하 및 지급준비자산제도 도입검토
 - 국공채시장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통화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

C. 여신관리제도 개편

C-1.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

- 1단계 : • 여신관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 업종분류 및 자기자본 지도비율 산정방식 변경, 여신한도 관리방식등 세부운용 기준의 합리적 정비
- 2단계 : • 기업경영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상의 규제축소
i)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 폐지(여신한도 관리만 적용)
ii) 다음 단계로 여신관리 대상을 10대 계열군으로 축소
iii)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를 축소정비
iv) 공정거래법, 공업발전법, 각종 세법의 개정 등 보완대책마련
- 3단계 : • 여신관리를 계열기업군별 여신한도 관리에만 국한토록 전환
• 동일 계열기업군 단위로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 설정, 운용

C-2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의 완화

- 1단계 : • 중소기업 의무대출 관련규정의 명료화
- 2단계 : • 의무대출제도 개선여건의 조정
i) 중소기업 신용보증확대 및 신용대출 기반강화로 시장금리에 의한 중소기업 대출제도 전환 도모
ii) 중소기업관련자금 등의 특수은행 또는 재정으로의 단계적 이관을 통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융 축소
- 3단계 : •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단계적 축소 및 정비
• 은행의 대출심사기법 제고, 중소기업의 내부 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한 대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D. 단기금융시장 발전

- 1단계 : • 콜시장 운용의 자율화(무차별 중개제도의 활성화)
- 단자회사를 단기금융시장 전문중개기관으로 역할 전환 제고
 - 콜시장 및 중개어음시장 활성화
 - 통안채 국공채 경매제도 도입에 대비한 시장정비
- 2단계 : • CP만기 다양화 등 단기금융시장 상품의 개발
- 단자회사에 대해 외국환 업무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 3단계 : • 시장금리 연동부 단기금융상품 등 신상품도입 허용(MMC, MMF 등)
- 단기금융성상품에 대한 제한철폐 검토

E. 외환자유화 및 자본거래자유화

단계	외 환 자 유 화	자 본 거 래 자 유 화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pm 0.8\%$ → $\pm 1.0\%$ 내외로 확대 - 외환포지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포지션 한도 차등 적용폐지 • 종합포지션 한도 확대 - 실수요증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를 1억불에서 3억불로 확대 • 모든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명을 사후제출제로 전환 • 실수요증명의 사후제출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 마련 •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제한 완화 - 해외증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의 범위 및 투자한도확대 • 수요에 맞추어 일반투자자의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확대허용 - 주식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당해기업 동의시) - 기업의 외자조달

단계	외 환 자 유 화	자 본 거 래 자 유 화
1단계	<p>－원화의 국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10만불 이하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원화 결제 허용 •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을 신고제로 전환 •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 수입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단기차입 허용 및 대상 기업을 고도기술 수반 서비스업으로 확대
2단계	<p>－환율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추가적으로 확대 <p>－외화포지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포지션 관리기준을 현재의 매입 외환기준과 자기자본 기준을 병행 운용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포지션 관리체제 개선 • 외환시장상황을 고려한 현물환 매각 초과 포지션 한도조정 <p>－실수요증명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을 자기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수요증명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 • 외국통화간 선물환 거래시 실수요증명 면제('94) • 실수요증명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 폐지('94) • 원화－외화간 선물환 거래시 실수요증명 면제 범위 확대('94) 	<p>－직접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개방예시계획”에 의거 개방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해외 직접투자 신고대상 확대 <p>－해외증권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 자유화 •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p>－주식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 • 국내 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94) <p>－채권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의 원화채권 발행허용('95) • 채권형 펀드 허용('95) • 주식연계채권 직접투자 허용, 특히 중소기업 CB('94) •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 허용('94)

단계	외 환 자 유 화	자 본 거 래 자 유 화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결제 허용범위를 건당 10만불에서 추가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외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차입 허용범위를 일반제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지급수입기간 추가 확대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형 자유변동 환율제도 정착추진 - 외환포지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포지션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 위주에서 외국환 은행의 건전경영위주로 관리방향 전환 - 실수요증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명이 면제되도록 하되, 실수요 원칙은 유지 - 원화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결제대상 범위를 무역거래에서 무역외 거래 등으로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의 신고제 정착 •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 - 주식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 - 채권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직접투자허용('97) - 기업의 외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내외금리차 등 경제여건 성숙에 맞추어 • 상업차관 허용 • 연지급 수입기간의 국제수준화

F. 기타

F-1 증권업개방

1994년에 지점설치요건을 완화하고, 1996년에 국내지점 영업기금을 인하

F-2 증권관련 산업개방

1993년에 외국투신사의 지분참여를 허용(전체 10%, 회사 5%)하고, 외국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도 허용하며,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1994년에 외국신용평가사 국내사무소 설치 및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또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지분참여 범위를 확대함.

1996년에 신용평가 회사의 지분참여 범위를 확대함.

F-3 신탁의 통안채인수

1994~1995년중 인수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996~1997년중 인수제도를 완전히 폐지함.

F-4 은행 진출형태

1996~1997년중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허용함.

B. 건설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 동 규(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와 일반국민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즉, 건설산업의 오늘날과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70~80년대의 부동산 투기와 발주·수주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및 정경유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다. 재벌기업들과 자금 및 능력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붐에 편승해 구입한 토지에 발주처로부터 계약금, 선수금 등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고 저렴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많은 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 고장에서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시공이 만연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정경유착이 발생해 왔으며 건설경기가 주도하는 급격한 경기변동은 물가 및 전체경제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요약한다면, 세간의 인식은 건설업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한 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한 폐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의 일부는 실제 일어났던 상황들이고 다른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났던 현상들이지만 그 원인중의 많은 부분을 실제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들이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업과 관련된 갖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조성한 또 하나의 당사자가 정부당국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정부에 의해 주도된 열악한 건설관련 금융환경은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고위험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업체들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관행 및 부실시공 등 고질적인 병폐로 이어졌다.

정부는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분류하여 제조업에 비해 자금조달 및 금융면에서 다양한 차별적 대우를 시행해 왔다. 건설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업은 그것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근거에서 주요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건설허가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심화하여 경기안정을 꾀했던 것이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의 선행지수의 하나로 건축허가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경영자들은 산업전체의 안정적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극히 단기적인 수요변동에 편승한 경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 한 건의 수주가 기업의 존립자체를 좌우하는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공사의 수주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무리한 전락이 동원되었고 이것이 불량자재 및 공법에 의한 부실공사를 양산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기관들이 업체들의 신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건설회사가 각종 공사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제조업에 비해 일률적으로 1% 높은 차별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이 불허되어 어음할인상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 밖에도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종 차별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중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 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들부터 금융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며 시중 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경우에도 주로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높은 금융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세째, 제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상의 지원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상의 각종 규제도 제조업에 비해 그 종류가 많고 정도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의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부의 지원소홀로 인해 우리 건설산업의 금융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건설산업의 금융환경은 1)선진국 건설업체의 금융환경과 2)국내제조업 금융환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건설금융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건설시장에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이 국내외에서의 건설수주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체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효율적인 건설금융에 대한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는 지금까지 다음의 이유들에 의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조업 금융지원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취급해왔고

건설업체들도 우리의 건설금융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현격하게 뒤쳐져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방대하여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논의만 거듭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일개 건설업체 차원에서 건설금융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많아 선뜻 이러한 연구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눈앞에 닥친 건설시장 개방으로 고도의 기술수준과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선진 건설업체들의 활발한 국내진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건설업체들이 그들과의 국내외에서의 수준전쟁에서의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면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금융경쟁력의 제고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시공기술면을 살펴보면 이 부문은 우리 건설업체들이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해외건설분 등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시공경험을 축적하여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공기술면에서는 금융기법면에 비해 선진국 업체와의 상대적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세기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의 다양한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정밀화되어 이제 시공부문에서의 신기술개발이나 기존기술의 정교화는 어느 정도 포화점에 이르러 건설업체에 가져다 주는 부가가치가 줄어들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반면, 건설산업의 금융환경이나 건설업체의 금융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전술한대로 지금까지 우리 건설산업이 ‘매출액 극대화’ 전략을 취해왔고 이 전략하에서도 저렴한 임금 등으로 채산성을 맞추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건설산업은 그 기반이 극히 불안정하여 내실있는 경영이나 수익성 제고 보다는 마구잡이식 수주 최우선 전략을 통해 성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 어느 산업분야 보다 건설업체의 부침이 심하고 어느 한 공사의 수주여부가 기업 자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건설산업의 현실로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지역에 따라 사업기반의 이동이 심하고 고정자산이 거의 없으며 상시 종업원의 비율이 적은 건설업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위험분에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 따른 위험이 추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프로젝트의 채산성이나 자금조달 및 관리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수주에만 성공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 문제도 따지고 보면 건설산업 자체의 불안정한 금융환경에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건설산업의 금융환경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의 개선이 유발하는 효과와 부가가치는 건설기술면에서의 발전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금융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각종 금융기관의 지원이 요청되지만 우리 업체들도 매출액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동시에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재·임금·일반관리비의 원가분석을 통해 원가 절감을 꾀하고 자금조달 및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공학(financial engineering)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건설업체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극히 취약한 금융환경하에 놓여 있었던 우리 건설업체들로서는 정부 및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원 환경개선과 기업자체의 재무공학 능력의 향상을 통한 금융경쟁력의 제고는 수주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자금조달 및 관리와 금융비용의 절감을 유도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 제고와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열악한 건설금융환경의 원인이 정부에 있든, 건설업체들에 있든, 혹은 건설업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에 있든 그것은 현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우리 건설산업의 국내외 건설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수주실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건설금융의 현황을 국내건설과 해외건설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것의 개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국내건설금융에서는 건설산업의 금융환경을 건설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 현황, 건설어음의 할인문제, 여신관련규제, 회사채 발행 등의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설문조사분석에 의해 실제 우리 건설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금융환경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금융뿐만 아니라 국내건설업의 전반적인 조세환경을 살펴보고 건설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해외건설금융에서는 해외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의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타 민간금융기관 등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에 제공하는 금융지원의 현황, 문제점 및 활용방안 등이 상술되어 있다.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주로 정부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의 차원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프로젝트 금융이나 시공자금융에 대한 요구는 해외건설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한 국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공포된 현재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는 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나 경제력 집중에 초점이 맞추어져 ‘민자참여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준공시설의 무상사용 허용’, ‘토지수용권의 허용범위’, ‘부대사업의 시행범위’ 등의 논의만 무성한 것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상업차관 도입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 제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하여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인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금융상의 여러 문제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건설업체 금융담당자들이 실무를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들의 개선이 우리 건설산업의 국내외 수주증가와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우리 건설금융환경의 개선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국내건설금융

1. 국내건설금융 현황

국내에서의 건설산업 금융환경은 제조업의 그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설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원천적으로 정부와 각종 금융기관에 의해 선별적 금융지원을 받아왔고 이외에도 건설업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가세해서 유무형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면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시장상황이 불안정하고 도산의 빈도가 높은 건설산업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제조업 위주의 정부시책과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한 신용평가 능력 및 건설업체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건설업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열악한 국내건설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1994년 기준 총자금운용액중 외 부차입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2.6%를 기록했는데 비해 건설업은 69.5%의 높은 부 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의 외부차입도 은행이나 제2 금융권 등 제 도금융권이 아닌 사채 등 비제도금융권에 의해 주로 조달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즉,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제도금융권의 대출실적이 제조업 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기준 건설업 생산액은 24조 9천억원으 로 GDP의 11.5%를 차지했으나 건설업에 대한 제도금융권의 대출은 18조 7천억원으로 총대출의 8.7%를 기록했는데 반해 제조업 생산액은 63조원을 기록해 GDP의 29%를 기 록했지만 대출액수는 97조원으로 총대출의 4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정도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건설업은 국민경제에의 기 여도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제도금융권중 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1988년 은행의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5조 10 억원으로 전체 은행대출의 10.2%를 차지했으나 1994년 1월에는 이 수치가 6.8%로 줄어 들어 제1 금융권에 의한 건설금융이 오히려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건설업체 들이 어음할인 및 대출을 제2 금융권 및 사채시장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자금조달비용과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건설업체의 리스크를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의 금융비용 현황을 금융비용/매출액, 금융비용/총비용, 차입금평균이자율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표 2-1〉 참조), 앞의 두 지표에서는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 해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금융비용을 시현하고 있으며 차입금평균이자율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건설업의 높은 부채비 율과 제2금융권 및 사채시장의 편중이용 실정에 비추어 볼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이것은 건설업이 금리가 낮은 단기자금을 공사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데 반 해 제조업은 금리가 높은 장기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금 융기관에서 실제 조달한 자금총액에 대해서는 제조업 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내부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아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데 이것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부채비율이 낮은 제 조업과 상반되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취약한 금융환경중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은행대출에 있어서의 차별금리, 건설어음할인상의 제약, 건설업에 대한 여신관련규제, 부동산의 취득 이용에 관한 규제, 건설업체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건설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에는 제조업에 비해 일률적으로 1% 높은 차별금리가 적용되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나마 대출을 꺼려 건설업체들은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업에 대한 차등금리 적용은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경영악화와 기술개발투자의 감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건설업과 제조업의 금융비용 비교

(단위 : %)

	금융비용/매출액		금융비용/총비용		차입금평균이자율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1975	3.4	4.9	2.8	5.0	12.9	11.3
1976	4.0	4.9	7.2	4.9	15.0	11.9
1977	2.5	4.6	2.8	4.9	11.8	13.1
1978	2.3	4.8	3.0	4.9	15.3	12.4
1979	3.0	6.0	3.6	5.9	17.2	14.4
1980	4.8	7.4	6.3	7.1	18.4	18.7
1981	7.1	8.0	5.3	7.8	19.5	18.4
1982	6.6	6.6	4.8	6.4	16.1	16.0
1983	6.3	5.2	4.5	5.2	15.4	13.6
1984	5.5	5.0	4.7	5.0	13.6	14.4
1985	6.0	5.3	5.5	5.3	12.2	13.4
1986	7.7	4.9	5.8	4.9	11.6	12.5
1987	8.4	4.6	5.6	5.3	11.8	12.5
1988	7.2	4.6	4.4	5.0	13.5	13.0
1989	5.9	5.1	4.2	5.0	13.0	13.6
1990	4.6	5.1	4.6	5.1	12.3	12.7
1991	4.4	5.7	4.4	5.6	13.1	13.0
1992	5.0	6.3	5.0	6.2	12.8	12.3
1993	4.7	5.9	4.7	5.8	12.6	11.2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하도급 및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건설어음의 원활한 할인 및 유통은 정부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한 우리 건설업계의 해묵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건설어음은 광공업 생산설비 건설관련어음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금융권내에서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그 이유를 생산활동이 아닌 사치성 분야에 대한 대출유도를 억제한다는 정책적 의지와 건설어음을 할인해 줄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업자 모두에게 중복되게 대출되어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서 지적하는 제반근거에 의해 그 정당화될 수 없다.

첫째, 건설활동이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건설업은 각종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해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치성 분야로 분류할 수 없고 제조업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둘째, 건설어음의 할인허용이 원·하도급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자금이 대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에 관해서는, 1990년 이후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어음 규정에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할인 의뢰한 어음’이라는 조항이 첨가된 점을 고려하면 어음할인이 원·하도급 업장계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어음이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 어음으로 인정될 경우, 이것이 통화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현상황에서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은행 대출중 상업어음 할인의 비중, 상업어음의 재할인 의존도, 본원통화중 상업어음 재할인의 비중 등 제반 영향 요소들을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건설어음 할인의 총통화증발 효과는 6%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¹⁾ 따라서, 건설공사관련어음의 한국은행 재할인 허용이 총통화 관리에 큰 애로요인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은행감독원은 매년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설정하는 데 이것은 최근 3년간 국내소재 대상기업체의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대표치와 표본업체 전체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주거대출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여 자기자본지도비율에 미달하는 계열기업군 또는 대상기업체를 재무구조 악화기업으로 판정하여 기업경영지도 및 대출금 상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전술한대로 건설업

1) 자세한 내용은 박동규·박대근·김재익·김재형, 건설 프로젝트 금융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협회, 1994. 11 참조.

은 자기자본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고정자본의 비율이 낮으며 경기변동에 민감해 이러한 여신관련규제 조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은 그 속성상 제조업과 달리 부동산 취득이 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어서 주업무로 취급되어야 하는 데 현행 부동산의 취득·이용에 관한 규정은 주거래은행이 건설업,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이용에 관해 사전승인, 보유부동산의 업무용·비업무용의 판단,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전 인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건설업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많은 건설업체들도 다른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재원의 다각화 전략에 의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을 원하지만 이것은 '유가증권 수급조절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해 기채조정협의회의 물량조정을 받게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제조업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2. 설문조사 결과분석

국내 건설업의 금융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94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건설협회등록 회원사 중 총 981개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을 송부한 결과 326개 업체가 의미있는 응답을 해와 이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우리의 건설 금융 현황을 파악했다.

(1) 국내건설 금융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건설업체가 느끼는 현행 금융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조사

〈표 2-2〉 국내건설 금융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1 군		2 군		3 군		4군 이하		합 계	
	N	%	N	%	N	%	N	%	N	%
건설어음 할인곤란										
차별금리적용	2	10	11	39	10	43	77	33	100	33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	7	35	8	39	7	30	103	45	125	41
외화도입및 외환대출 규제	1	5	1	3	0	0	0	0	3	1

결과가 <표 2-2>에 나타나 있다. 예상한 대로 개선요망사항의 우선순위는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드러냈다. 대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여부 보다는 제조업에 비한 차등금리 적용 등 차별적 대우를 최대의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건설어음 할인에는 큰 곤란을 받고 있지 않았는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어음할인 곤란이 최대의 난제임이 밝혀졌다.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은 대상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어서 전체 업체들의 45%가 금융환경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2) 건설업체의 자금조달구조

우리 건설업체가 필요한 단기 및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표 2-3>에 나타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일수록 제도금융권, 그 중에서도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일수록 자체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채의 발행은 대기업에서 21.8%를 기록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자체가 어려워 거의 없었다. 4군 이하의 기업에서는 사채의 비중도 2.6%나 되었다. 공제조합에의 의존도는 중소기업일수록 큰 것으로 조사되어 3군 기업들은 소요자금의 1/4을 공제조합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건설업체의 자금조달구조

(단위 : %)

	1군(N=20)	2군(N=29)	3군(N=28)	4군이하(N=246)
자체자금	18.0(20.7)	29.6(34.6)	42.9(35.1)	35.3(35.7)
은행	29.8(14.3)	38.9(26.3)	20.4(21.2)	24.1(24/3)
비은행금융기관	22.9(19.1)	8.9(11.9)	5.9(10.8)	8.7(14.3)
회사채	21.8(17.1)	7.9(13.2)	1.6(4.6)	1.8(7.9)
사채	0.0(0.0)	0.2(0.9)	0.2(0.9)	2.6(8.7)
공제조합	5.9(14.7)	7.8(8.2)	24.8(26.9)	21.6(23.9)
기타	1.4(3.8)	5.9(15.3)	4.6(10.3)	5.4(12.1)

* 괄호안은 표준편차

(3) 하도급비의 비중, 현금비율 및 결제기간

대형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해 시공할 경우 하도급비가 총시공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군 업체의 경우 53.8%로 나타나 반 이상을 차지했다(<표 204> 참조). 3군 이하의 기업의 하도급 비중은 약 35%로 나타났다. 외주비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1군 기업이 37.7%로 나타난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늘어나 3군 기업의 경우 62%를

<표 2-4> 하도급비의 비중, 현금비율 및 결제기간

① 하도급비의 비중 및 하도급비중 현금비율

(단위 : %)

	1군	2군	3군	4군이하
수주형 공사비중	63.2(27.3)	77.7(28.4)	89.1(17.4)	81.3(30.4)
하도급비 비중	53.8(16.3)	47.7(19.7)	34.4(16.8)	37.9(19.2)
하도급비중	37.7(18.3)	44.9(13.7)	62.0(19.2)	58.4(24.7)

* 괄호안은 표준편차

② 외주비의 어음결제기간

(단위 : 업체수, %)

	1군	2군	3군	4군	합계
30일 미만	0	0	1	4	5
	0.00	0.00	4.17	1.80	1.69
31-60일	12	3	8	50	73
	60.00	10.00	33.33	22.52	24.68
61-90일	7	20	13	122	162
	35.00	66.67	54.17	54.95	54.73
91-120일	1	7	2	46	56
	5.00	23.33	8.33	20.72	18.92
합계	20	30	24	222	296
	100	100	100	100	100

기록했다. 이것은 대기업일수록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주로 어음으로 결제하는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주비를 어음으로 지불할 경우의 평균적인 결제기간은 1군 기업의 경우 31-60일이 가장 많았다. 2군 이하는 61-90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그룹에서는 90일이 넘는 어음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어음할인 금융기관

대상업체들이 건설관련어음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가를 조사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건설금융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표 2-5>에 나타난 조사결과, 건설업체들이 보유어음을 주로 할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대기업일수록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빈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건설어음 할인이 정밀한 신용평가에 의하기 보다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지역적 기반과 재력 및 은행들과의 오랜 거래관계 등의 비정형화된 근거에서 이루어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어음을 할인하지 않고 만기처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1군 업체의 경우 보유어음의 53%를 만기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어음할인 금융기관

(단위 : %)

	1군(N=15)	2군(N=21)	3군(N=19)	4군이하(N=171)
은행	6.1	22.1	29.7	31.0
비은행 금융기관	41.2	43.6	29.7	22.7
사채시장	0.0	0.0	0.3	3.1
만기처리	52.7	34.0	38.9	35.3
기타	0.0	0.3	1.3	7.6

(5) 원도급 공사의 선급금 비율

건설업체가 공사를 원도급업자로 수주했을 경우의 선급금도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주요 재원이 된다. 1군 및 2군 업체를 대상으로 선급금이 총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로 나누어 보면 먼저 공공 공사에서는 계약액의 10

~19%의 선급금을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2-6〉참조). 10% 미만의 선급금 지급공사도 전체 수주공사의 1/4이나 되었다. 민간공사에서는 선급금 지급공사도 전체 수주공사의 1/4이나 되었다. 민간공사에서는 선급금 비율이 더욱 낮아져 계약액의 10% 미만을 받은 업체가 1군에서는 71%, 2군에서는 54%를 차지했다. 10~19%의 선급금 지급 공사는 각 18%, 31%를 기록했으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공사는 거의 없었다.

〈표 2-6〉 원도급 공사의 선급금 비율

(단위 : 업체수, %)

	1군	2군
10%미만	5 27.78	6 23.08
10~19%	7 38.89	9 34.62
20~29%	3 16.67	7 26.92
30~39%	0 0.00	3 11.54
40~49%	0 0.00	1 3.85
50%이상	3 16.67	0 0.00
합계	18 100	26 100

(6) 건설은행 설립의 필요성

최근에 건설산업 유관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우리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건설은행'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것이 건설금융 환경에 기대되는 효과를 건설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326개 대상업체 중 79%가 건설은행의 설립이 우리 건설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긍정

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어떠한 형태가 되든 이러한 은행의 설립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사업전망

임박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개방후의 사업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표 2-7〉참조). 그 결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군 기업의 47%가 건설업 개방이 그들의 향후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60% 이상이 별 변동이 없거나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실제 개방후에 미칠 손익계산이 대기업, 중소기업별로 어떻게 드러날 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들의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건설 자금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에서 지적한 국내건설업 금융환경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제조업에 대한 일률적인 1% 가산금리는 폐지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책금융의 지원방향은 이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이나 산업별 지원체제에서 어느 업종의 GDP 기여도 및 외부경제효과가 더 큰 가를 중시하는 기능적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GDP 기여도에 훨씬 못미치는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건설 등에서와 같이 외부경제효과가 큰 건설산업은 정책금융의 차별대상에서 수혜대상 분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어음의 재할인 허용 문제도 그것이 총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 크지 않고 건설산업 자체도 생산유발효과가 커서 사치성 분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건설어음의 할인 허용이 한국은행 규정상 원하도급자에게 중복대출 될 우려도 거의 없으므로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건설어음의 전면적인 한국은행 재할인 허용이 통화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 등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외부경제효과가 높은 건설사업부문 어음부터 단계적으로 재할인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 및 부동산관련 여신규제 적용시에도 제조업과 달리 건설산업이 갖는 산업적 특성, 즉, 부동산을 이용한 기획, 개발형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용부동산의

〈표 2-7〉 건설시장 개방에 사업전망

(단위 : 업체수, %)

	1군	2군	3군	4군	합계
아주 밝다	1 5.26	0 0.00	0 0.00	1 0.41	2 0.63
밝다	8 42.11	11 39.29	9 32.14	31 12.65	59 18.44
그저 그렇다	5 26.32	8 28.57	5 17.86	104 42.45	122 38.13
어둡다	4 21.05	8 28.57	11 39.29	97 39.59	120 37.50
아주 어둡다	1 5.26	1 3.57	3 10.71	12 4.90	17 5.31
합계	19 100	28 100	28 100	245 100	320 100

판단이나, 자구노력유무, 사전승인 등에서 신속적인 규제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SOC 사업 추진 등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건설사업 부분의 자금수요에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평점제도를 개선하고 회사채 발행한도를 상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UR협상의 타결로 건설시장과 더불어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 되어 외국 건설업체들은 자국의 금융업체를 통한 현지금융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서 수요창출형 건설에 직접 참여하여 금융능력이 부족한 국내 건설업체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건설산업은 금융환경의 개선은 물론 시장개방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금융 등 새로운 건설금융 기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여신관련 정책금융 방향의 정립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업 관련 금융기관들인 건설공제조합, 주택은행 등의 운영을 정비·통합·개편함으로써 금융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건설업의 조세환경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대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각 세목별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의 기술개발과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조항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건설업은 생산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투자의 원금을 회수하는데 제조업보다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있는 현행 기술개발 및 투자세액공제의 조항별 공제율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거나 혜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조세특례조항의 지원대상으로 제조업과 같이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술에 대한 규정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의 인정 폭이 매우 작은 실정이므로 건설기술의 개발을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기술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째, 기술개발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익성을 제공시키기 위하여 건설장비의 리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해외건설금융

1. 해외건설금융 현황

최근의 해외건설시장은 전반적인 세계경기 침체와 발주국 특히 개도국들의 재원조달 애로에 따른 건설수요 부족으로 구매자시장화되어 발주자가 수주업체에 대해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금융을 요구하거나 금융추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발주국들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금융 패키지(financing package)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및 보다 경쟁적인 조건의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오늘날 해외건설 공사 수주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건설시장이라 할 수 있는 개도국들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원유를 비롯한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와 외채원리금 상환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자체적으로 조

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개도국들은 개발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주로 해외로부터 조달하여 왔거나 1980년대의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외부자금 조달원이었던 국제 상업 은행 및 공적 수출신용기관 등이 개도국에 대한 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소요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도국들의 재정사정 악화는 그 자체가 시공업자에 대한 금융제공요구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또한 전반적인 발주감소로 이어져 수주업체간의 입찰경쟁이 심화되어 건설업체들은 발주국의 금융제공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경우 주요 해외건설시장이 개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금융이나 프로젝트 금융의 제공여부가 건설공사 수주에 있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으로서 첫째, 과거 우리의 해외건설은 상당부분 원청이 아닌 하청의 형태로 이루어져 금융제공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고 둘째, 개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건설시장이었던 중동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유가에 힘입어 건설공사 소요자금의 조달이 원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를 비롯한 일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중동 산유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건설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 해외건설도 이제는 하청도 있지만 본격적인 원청의 형태로 수주경쟁에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금융의 제공이나 프로젝트 금융이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환경변화와 함께 국내 건설업체들로서도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값싼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의 원천을 상실함으로써 해외건설 수주경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금융 패키지의 제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 시장은 기술면에서의 우위가 수주의 주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아직 기술적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에게는 이 시장의 진출이 벽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건설시장은 이에 반해 우리 업체들이 과거의 실적등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했고 기술면에서도 다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진출지역인 데 이들이 프로젝트 금융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도국 시장이 세계 전체 해외건설 발주액의 70%에 육박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이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 선진국의 금융지원 현황

미국 McGraw-Hill사의 ENR지가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계건설시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선진 6개국이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6개국의 시장점유율은 82년의 73.4%에서 매년 상승하여 92년에는 전세계 건설시장의 88.1%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의 해외수주 실적이 급증한 데에는 이들 국가 건설업체들의 우수한 기술력 이외에도 자국 정부와 공적 수출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이 다양하고도 유리한 조건의 시공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즉, 최근 해외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개도국시장에서의 금융요청 공사에 대해 다양한 조건의 금융패키지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수주증가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건설협회가 1991~1993년 중 MEED, AED, EN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Project & Trade Finance지 등에서 수집한 총 161건의 프로젝트 금융 제공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체 720.9억달러의 계약금액 중 선진 6개국이 76.6%를 수주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금융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현지업체 하청의무비율 15~20%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주구조는 ENR지에서 집계한 해외발주 세계건설시장에서의 수주구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요청공사의 최대수주국은 일본으로 전체의 25.2%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발주 세계건설시장에서의 일본의 점유비율인 8.5%보다 훨씬 수치로 일본 건설업체가 금융제공능력 면에서 다른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프로젝트 금융 요청공사를 수주한 국가들이 제공한 금융의 형태와 건수를 보면 수출신용이 117건으로 전체 금융제공 건수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차관 60건(24.2%), BOT방식 42건(16.9%), 원조금 29건(1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수출신용과 원조금을 묶은 혼합신용(mixed credits)이 13건, 수출신용과 상업차관이 복합된 협조융자(co-financing) 형태가 39건이었다. 용자조건중에서 각국이 제공하는 금리를 보면 통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수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양허적인 조건의 혼합신용을 제공하거나 민간은행들에게 낮은 금리로 금융을 제공하게 하고 금리차를 보전해 주는 방

식으로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경쟁적으로 혼합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질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OECD는 혼합신용을 제공할 경우 원조요소비율(GE)이 최소 35%(저개발국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 설문조사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외건설금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94년 7월에 시행하였다. 총 108개사의 해외건설 참여회사에 대해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25개사로부터 응답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 23.1%), 이중 신뢰도가 낮은 5개사를 제외한 20개사의 응답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 총매출액 대비 해외건설의 비중

(표 3-2)는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업체에 있어서 해외건설부문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에 있어서 해외건설의 비중이 3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5% 미만이 40%, 5~10%가 25%, 2~30%가 20%, 40% 이상이 10%를 나타내 대형업체들에 있어서 해외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후반까지도 해외건설의 매출액이 국내 건설보다 더 높은 건설회가 많았으나 그 후의 시장침체로 해외건설의 비중은 급감했다. 이들 업체들의 진출대상지역을 보면 동남아가 17개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동지역 9개사, 중국 8개사의 순이었으며 선진국은 일본 4개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했다.

(2) 해외진출 애로요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금조달 및 금융상의 애로가 5개사로 현지정보부족(7개사)에 이어 두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나 금융부문이 해외건설 수주경쟁에 있어서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은 해외건설 금융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외화가득를 요건, 융자한도, 지급보증 등에서의 애로가 금리, 금융제공비율, 대상지역 제한 등에 비해 더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 총매출액중 해외건설의 비중

해외건설비중	빈도	백분율
10% 미만	13	65%
11%~30%	5	25%
31% 이상	2	10%

(3) 거주자 외화대출 현황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를 위한 거주자 외화대출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5개사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 건설공사를 위한 외화대출의 벽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자 외화대출의 용자대상 사유는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재로서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가 4개사, 기타 한은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재 1개사로 해외건설공사보다는 국내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설재의 수입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자 외화대출을 제공한 기관을 보면 시중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전무하여 이 분야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 3-3〉 해외건설 금융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

순위	항 목	1	2	3	순위평균
1	외화가득률 요건	4	4	1	2.87
2	업체별/연도별 용자한도	3	3	4	3.00
3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	4	4	1	3.07
4	금리	3	1	3	3.50
5	금융제공비율	1	3	4	3.80
6	대상지역의 제한	1	1	2	4.53

(4) 해외차입의 형태

국내공사를 위한 해외차입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5%에 해당하는 11개사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많은 회사들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대출보

다는 해외차입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4>는 건설업체들의 해외차입 형태를 보여 주는데 국제개발기구나 공적 수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차관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이 특징적이다.

4. 문제점 및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상당히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금융의 공여사례는 대형 해외건설업체당 2~3건에 불과할 정도이고 그나마 프로젝트 금융 경험은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금융요구 해외공사 수주가 부진했던 것은 우리 해외건설업체가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법결여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도 거의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표 3-4> 해외차입의 형태

형 태	빈도	백분율
공 공 차 관	0	0.0%
상 업 차 관	2	13.3%
해외채권발행	3	20.0%
무 역 금 융	1	6.7%
기 타	9	60.0%

내자의 경우 국내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가 해외건설을 위한 자금의 조달 자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법령도 해외건설을 외화대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주로 제조업체의 상품수출관련 무역금융에 치중하고 있어 해외건설 등 용역의 수출은 지원규정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FDCF)도 건설업체가 이 자금을 근거로 해외수주를 도모하기에는 자금조성규모가 빈약하고 그나마 까다로운 용자절차 및 조건이 요구되어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해외건설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과 민간은행들을 들 수 있는 데 이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역

외금융도 원리금상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자체적인 프로젝트의 타당성이나 위험분석능력 부족으로 해당은행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로 은행간, 비은행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들의 프로젝트 금융 참여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각 은행들의 노우하우가 축적되어 이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속성으로 하는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UR의 타결 등으로 각국의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이 외국업체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물론 우리 업체들도 외국, 특히 선진국 시장에 보다 양허적인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우리 업체들이 자국 및 선진국의 건설업체와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 건설업체의 금융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업체 차원에서 수주대상 프로젝트의 산출물 가격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흐름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다양한 유형에 따라 관련된 위험의 종류와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금융조건을 예상하여 관심있는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금융환경상의 제반문제점과 이를 개선·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금융조건

가. 경쟁국과의 비교

우리 나라의 공적금융지원제도는 활용재원이나 신용공여방식면에서 뿐만아니라 용자비용이나 기간 및 금리 등 거의 모든 금융조건면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하다. 먼저 활용재원면에서 경쟁국들은 공적수출신용과 공적기관의 보증하에 상업신용을 이용하는 등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공적수출신용마저 일부 품목에 편중지원되는 데다가 민간은행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해외건설금융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공여방식도 경쟁국들은 구매자신용(buyer's credit) 및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 건설업체에 유리한 구매자신용 베이스의 자금지원을 확대하

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로 공급자 신용만을 지원하고 특히 건설수출의 경우에는 구매자 신용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유자기간도 경쟁국의 업체들은 통상 7~15년의 상환기간에 30년까지도 연장 가능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6년 내로 제한했다가 1994년 4월의 '해외건설지원 확충방안'에 의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금리는 경쟁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표면적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업표준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CIRR)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국들은 정부원조자금과 공적수출금융기관자금 등을 결합한 혼합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낮은 금리의 금융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반면 우리나라는 혼합신용이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에 활용된 예가 없다. 금융제공 비율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약액의 9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업체별·국가별·건당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85~100%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현지하청 계약분과 선수금분에 대해서도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실제로는 계약액의 100%가 넘는 자금지원도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국의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들은 해외건설에 대한 민간신용의 제공에 대해 보증과 금리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상업은행은 중단기금융을 취급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장기금융을 취급하는 등 협조유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급자의 국외소요자금에 대해서만 협조유자가 실시되어 협조유자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건설수출이나 구매자 신용은 아예 협조유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보증지원도 우리나라는 공급자의 국외소요자금에 한해서만 보증하고 있고 건설 수출이나 구매자 신용에 대해서는 보증하고 있지 않은데 시공자금융이나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과 같이 건설수출과 구매자신용에 대해서도 계약액의 80%이상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건설수출 이외의 수출금융과의 비교

〈표 3-5〉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제조업에 대한 수출자금, 건설용역수출 및 기타용역수출에 있어서의 기술제공자금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는 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용역수출에 적용되는 기술제공자금의 금융 조건은 용자범위, 용자대상액, 용자비용, 유자기간, 협조유자 등 모든 면에서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불리한 금융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건설용역수출을 위한 기술제공자금 공여실적이 매우 부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1983년 이후 이 자금이 해외건설에 제공된 사례가

없다.

(2) 외국환 관련법령

현행 외국환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정은 우리경제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외화부족에 시달리던 1960년대 초에 제정되어 주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바 해외건설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저해하여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환 관련법령도 포지티브시스템으로부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등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며 특히, 1994년 5월 20일자 재무부고시 제94-9호는 해외건설업에 장장을 초래해 온 외국환관리규정 중 몇 가지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있다.

즉, 재무부고시 제94-9호는 외국환관리규정으로부터 자금관리 주재원제도를 규정했던 제9-17조, 부진공사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제9-18조를 삭제하고,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액에 있어서 한국은행총재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요구했던 제12-7조를 개정하여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국은행총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30만불 초과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관련 법령은 아직도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있어서 시공사 금융 및 프로젝트 금융의 제공에 필요한 거주자 외화대출, 역외금융의 이용, 현지금융 등에 대한 규제를 존속시키고 있어서 건설업체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동 법령의 개정작업과정에서 문제 조항들을 개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제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감면규제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 해외건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그 근거규정이 제정된지 오래되어 변화된 현재의 건설환경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그 내용도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 해외건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법개정이나 대체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1)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2)건설장비 재반입시의 관세면제제도, 3)해외현지금융시 본사의 지급이자분에 대한 국내에서의 원천징수, 4)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표 3-5〉 수출자금과 기술제공자금의 용자조건 비교

	수출자금	기 술 제 공 자 금	
		건설용역수출	기타용역수출
용자범위	국내외 소요자금	국내소요자금	국내외소요자금
용자대상액	계약액 - 선수금 (15~20% 이상)	계약액 - 외국업체하청분 - 여타자금지원대상액	계약액 - 선수금 (15% 이상)
용자비율	최고 100%	90% 이내	85% 이내
용자기간	10년이내(20년까지 연장가능)	6~10년 이내	10년이내(20년까지 연장가능)
협조용자 ¹⁾	가능	불가능	가능

자료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실태와 대응방안, 해외건설협회, 1994.

주 : 1) 협조용자기관은 국외소요자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설용역수출의 경우 협조용자 자체가 불가능